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##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태훈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교육의 방법, 내용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(안 제13조)
  - 교육의 대상, 연간교육 횟수 및 시간, 교육 내용 구체화
  - 교육의 방법 규정을 구체화하여 신설

5. 검토내용

- 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법률 제20038호, 2024. 1. 16. 일부개정, 2025. 1. 17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5208호, 2025. 1. 14. 일부개정, 2025. 1. 17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, 택시운수

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역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음.

<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>

-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** ① 교통사업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 1. 16.>
1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
  2. 성폭력 예방교육
- ③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택시운수종사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4. 1. 16.>
- ④ ~ ⑥ (생략)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16.>

- 또한, 같은 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1442호, 2025. 1. 17. 일부 개정, 2025. 1. 17. 시행)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, 택시운수종사자 등은 연 1회, 2시간 이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,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면허, 운전경력 및 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안 제13조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

규정을 구체화하여 신설한 것임.

- 조례안 예고('25. 4. 15. ~ '25. 4. 2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 6. 검토의견

- 이번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개정된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및 그 하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교육 대상 및 교육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특히 교통약자서비스 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,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등 교육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운수종사자들의 역량 제고와 의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. 이는 결과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